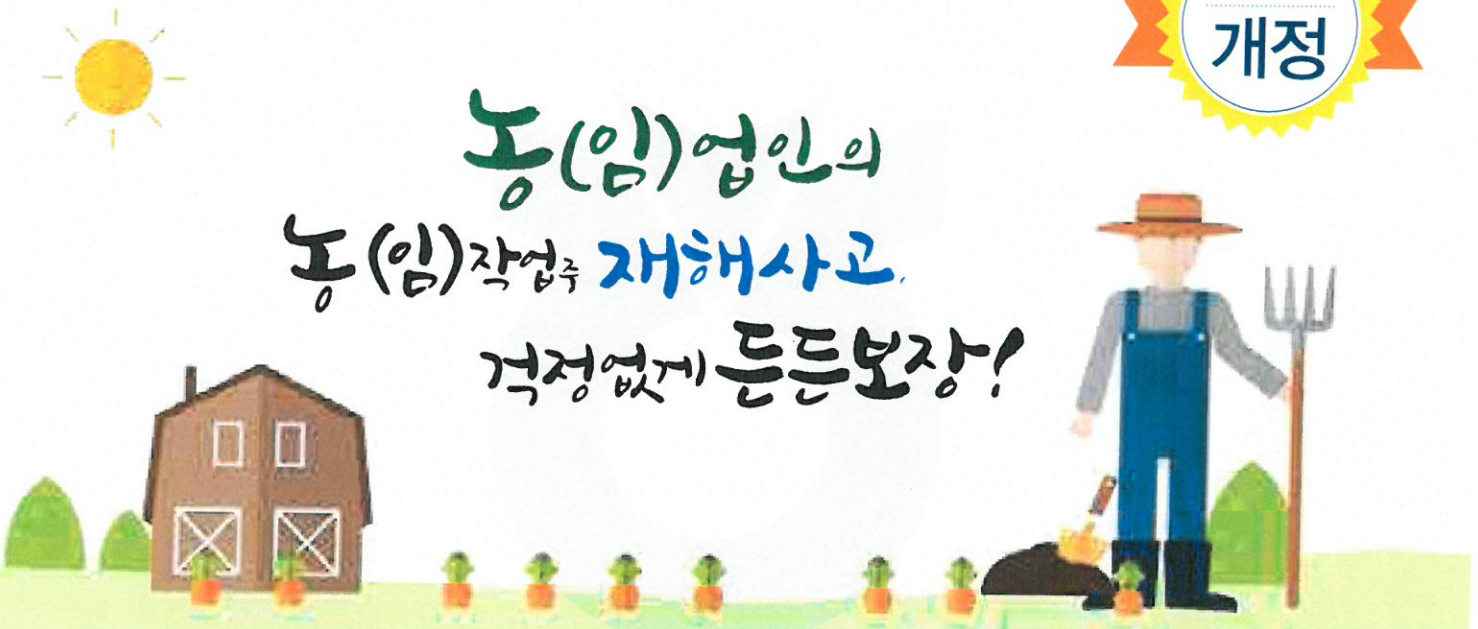


농(임)업인 NH안전재해보험 | 무배당 |



농(임)업인의
농(임)작업중 재해사고,
걱정없이 든든보장!



상품특징

-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**농(임)업인 대상 보험상품**
-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중점보장 (보험료의 50%이상 국고 지원)
- 성별, 연령별 구별없이 **단일 보험료**



가입내용

보험기간/납입기간	가입나이	가입자격	보험가입금액
1년	만15세 ~ 84세	농업인, 임업인	1,000만원(1구좌) 단일

※ 납입주기는 1회납(연납)입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 NH농협생명

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
※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 시보통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 ※ 사망보험금의 경우 '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'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. ※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. ※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※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(민원)이 있을 경우 농협생명 콜센터(1544-4000) 또는 홈페이지(www.nhife.co.kr)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 또한 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(국번없이 1332, www.fss.or.kr) 또는 생명보험협회(02-2262-6565, www.klia.or.kr)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농(임)업인NH안전재해보험 | 무배당

주요보장내용

(가입금액 1,000만원(1구좌)기준)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				
		일반 1형	일반 2형	일반 3형	장애인형	
유족급여금	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(다만,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'살충제의 독성효과 (T60)' 제외)	5,000만원	7,500만원	12,000만원	7,500만원	
장례비	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(다만,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'살충제의 독성효과 (T60)' 제외)	100만원				
고도장해급여금	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최초 1회 한)	5,000만원	7,500만원	10,000만원	7,500만원	
재해장해급여금	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% 이상 80%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	5,000만원 × 장해지급률	7,500만원 × 장해지급률	10,000만원 × 장해지급률	-	
간병(재해장해)급여금	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최초 1회 한)	500만원				
간병(질병장해)급여금	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최초 1회 한)	500만원				
휴업(입원)급여금	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(1회 입원당 120일 한도)	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				
재활(고도장해)급여금	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최초 1회 한)	500만원				
재활(재해장해)급여금	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% 이상 80%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	500만원 × 장해지급률			-	
특정질병수술급여금	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	(수술 1회당) 30만원				
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	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	(진단 1회당) 30만원				
상해·질병치료급여금	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	기본형	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약관의 상해·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			
		상해·질병치료급여금 부(不)담보형	-			

※ "농업작업안전재해"라 함은 약관의 "농업작업의 범위"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※ "농업작업안전질병"이라 함은 약관의 "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"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.

보험료 예시

(가입금액 1,000만원(1구좌)기준)

구분		일반인형						장애인형
		개인계약			부부계약			
		1형	2형	3형	1형	2형	3형	
기본형	보험료	108,500 원	135,400 원	174,000 원	217,000 원	270,800 원	348,000 원	121,100 원
	정부 지원액	54,250 원	67,700 원	87,000 원	108,500 원	135,400 원	174,000 원	60,550 원
상해·질병치료급여금 부(不)담보형	보험료	69,700 원	96,700 원	135,300 원	139,400 원	193,400 원	270,600 원	82,400 원
	정부 지원액	34,850 원	48,350 원	67,650 원	69,700 원	96,700 원	135,300 원	41,200 원

※ 상기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의 50%를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에 대한 예시임

해지환급금

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, 해지 시 미경과 보험료(납입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)를 돌려드립니다.

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알고계시나요?

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(임)업인

-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
-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- ③ 최근 2년 이내 4대 중증질환 (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 (단, 고혈압제외)



지원 내용

- 영농도우미 1일 임금의 70% 국고지원 (1일 최대 42,000원) 이용농가 자부담 30%
-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



신청

농협에 문의

